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4. 28.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22호로 2025년 4월 1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2025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주차장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을 규정
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주차 요금 신설 등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조문 신설(안 제1조의4)
- 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일반의 이용 제공 등 조문 신설(안 제21조의5, 6)
- 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 활성화를 위한 요금제 신설(안 별표 1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5. 3. 27.~ 4. 16./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영등포구의 만성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을 개방 근거를 마련하고, 노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 인상, 공유주차 확대 및 「주차장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의4(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는 법 제3조에서 구청장에게 “수급실태조사¹⁾(2003.12.31. 신설)”및 “안전관리 실태조사²⁾(2019.12.24. 신설)” 실시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함. 참고로, 수급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안전관리실태조사는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라 함.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안 제21조의5(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 등을 위하여 신설한 것으로, 제1항은 법 제19조제2항³⁾, 제13항⁴⁾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제나목⁵⁾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제2항 및 제3항은 법 제19조의3제1항⁶⁾이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1조의6(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은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이니만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사항에 해당하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별표1의2](거주자 등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표)**의 주요개정 내용은 ▲노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 인상 ▲노상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주차 확대를 위한 것임.
 - 현행 조례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을 노상, 노외(자투리땅, 부설주차장 개방)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주차요금을 노상·노외로 구분하였으며, 노외 주차요금 중 거주자는 1만원, 상근자(직장인)는 2만원씩 인상함.

3) ②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4) 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나.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

6) ①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의2] <현행 조례>

거주자 등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1구획당/1월)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정기권	거주자	40,000	30,000	20,000
	상근자	40,000	30,000	20,000
시간주차		- 1시간당 1,200원		
기타		- 별표 1에 따른 할인을 적용 - 공유주차(공유앱, 시간주차권 등) 요금은 할인을 적용 제외		

[별표 1의2] <개정안>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정기권	노상	40,000	30,000	20,000
	노외	50,000	40,000	30,000
시간주차		- 1시간당 1,200원		
기타		1. 별표 1에 따른 할인을 적용 2. 공유주차(시간주차 등)요금은 할인을 적용 제외 3. 노상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자의 동의하에 방문객 등 다수의 차량이 이용시 2만원을 가산한다. (전일운영, 가산금에는 할인을 적용 제외) 4.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 활용과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노외에 조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상근자 이용시 1만원을 가산한다.		

- 주차요금 규정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노상⁷⁾·노외⁸⁾ **공영주차장**의 경우 법에서 주차요금의 요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한편, 부설주차장의 경우 조례로 주차요금의 요율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 9)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으로 보아 조례로 주차요금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 법에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중 노외 주차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집행부서에 따르면 **노외 주차요금 책정 기준은 ▲공영노외주차장 5급지 주차요금과의 형평성 제고 ▲민간의 자투리땅 제공 유도를 위한 보상책(운영수입금 귀속) 강화** 등이라 밝힘. 한편, 영등포구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시행 당시(2004.08.01.)의 주차요금을 현재까지 유지(약 21년)한 것으로 파악됨.
- 참고로, 영등포구는 자투리땅을 제공한 토지소유주에게 “**운영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하나를 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7)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8)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9)①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 공영 노외주차장 5급지 및 개정안 요금 (단위: 원)				
		전일	주간	야간
공영노외주차장 5급지		65,000	39,000	26,000
개정안 (노외)	거주자(1만원 증)	50,000	40,000	30,000
	상근자(2만원 증)	60,000	50,000	40,000
금액차이 *(5급지-개정안)	거주자	▲15,000	1,000	4,000
	상근자	▲5,000	11,000	14,000

- 또한, 2025년 4월 기준 영등포구 노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주차요금 인상으로 한 달 기준 1,240만원, 연간 약 1억 5,0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추산¹⁰⁾됨.

영등포구 노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자 (2025년 1분기 기준)			
	전체	거주자	상근자
대상자	784명	328명	456명

- 안〔별표1의2〕기타란 제3호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중 “지정주차¹¹⁾ 공유제(가칭)”를 신설한 것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¹²⁾에 근거함.
- 집행부서에 따르면 지정주차 공유제는 상가 손님 차량의 단속으로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 주차요금에서 2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손님·방문객 등 공동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는 소상공인 사업환경 개선의 효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10) 해당 추산은 2025년 상반기 배정자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거주자, 상근자 각각의 할당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증가되는 세입 또한 배정자 구성에 따라 유동적임.

11) 일반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없는 건물 출입구 앞, 점포 앞 등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12)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전용주차자동차”라 한다)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영등포구 지정주차 공유제(가칭)

○ 지정주차(舊내집앞주차) 공유 개요

- 정 의: 지정주차 구획을 손님·방문객 등 외부 차량이 사전등록 없이 배정자 책임에 자율적으로 이용 가능
- 운영대상: 지정주차 배정자 중 지정주차 공유제 신청자
- 요 금: 월 6만원(2025년 상반기 조례 개정 추진 예정)
- 시행시기: 조례 개정 이후 배정부터

○ 운영방법

- 이용방법: 배정자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손님·방문객 등 공동이용 가능
- 단속시행: 원칙적으로 무단주차 단속에서 제외하며, 배정자가 차주 연락 후 5분간 미이동할 경우에만 단속 시행(즉시 단속)
- 배정취소: 배정자 외 차량의 정기·장기 주차 및 주차구획 전대(요금징수)를 금지하며, 적발 시 배정취소 및 주차구획 삭제(폐지) 가능

○ 안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 [별표1의2]에서 노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도 “공포한 날”(5월 예정)부터 시행임.

- 한편, 2025년 하반기(6개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기 접수를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되기 전인 4월 7일~18일 동안 받았음.
- 이에 따라 집행부서는 거주자 등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 중 인상된 노외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 밝힘.
- 이는 공포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조례를 따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 대한 개방근거 마련 및 공유주차 확대를 통하여 영등포구의 주차구획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 노외 거주자 등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 인상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이 시행 후 21년 동안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 점 및 공영주차장 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인상된 요금 적용 시기와 관련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가 5월 중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부서의 의견대로 인상된 노외 주차요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별표 1의2〕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시행일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 1. 9.>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2. 4.>

⑮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⑯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2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

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주택가 등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나.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

2.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설물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전용주차자동차”라 한다)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4. 16.>

4 기타 참고자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자투리땅 주차장 운영현황

연번	동명	위치	면적 (㎡)	주차 면수	배정자	
					가주자	상근자
1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188-413 외 1	314	11	7	1
2	영등포동	영등포동8가 65	762	28	2	26
3	영등포동	영등포동2가 222-2	100	5	-	5
4	여의동	여의도동 61-1	8,264	230	27	205
5	당산1동	당산동3가 370-3	1,435	12	1	11
6	당산2동	당산로 51길	157	8	2	6
7	당산2동	당산동6가 104 - 12 외 1필지	162	5	4	-
8	도림동	도림동 265-10	6,400	21	-	-
9	도림동	도림동 138-49	134	4	4	-
10	문래동	문래동2가 63	2,927	17	-	16
11	문래동	문래동1가 129-1	767	20	4	12
12	양평1동	양평동2가 33-1	4,338	161	79	91
13	양평2동	양평동6가 3	2,094	82	17	66
14	신길1동	신길동 54-23	464	25	17	1
15	신길1동	신길동 464-6	235	3	3	-
16	신길4동	신길동 221-33 외 1필지	271	10	10	-
17	신길5동	신길동 425-28 외 4필지	515	18	17	1
18	신길6동	신길동 1570	106	7	5	-
19	신길6동	신길동 509	172	5	4	1
20	대림1동	대림동 976-25	139	5	4	1
21	대림2동	대림동 1072-19	165	5	3	2
22	대림3동	대림동 810-60	46	5	3	2
23	대림3동	대림동 681-9 외 1필지	542	14	14	1
계			30,509	701	227	448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설주차장 운영현황

연번	동명	명칭	주차 면수	배정자	
				가주자	상근자
1	대림1동	살레시오	8	8명	0명
2	신길7동	해군호텔	10	8명	1명
3	신길3동	신흥교회	20	17명	3명
4	당산1동	당산포레나	47	47명	0명
5	신길6동	신흥청년주택	32	21명	4명
계			117	101명	8명